

2026년도 2분기 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」 공고

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본 조례)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결혼·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‘2026년도 2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16.
부산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:**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- 사업목적:**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·출산 친화 환경 조성
- 사업대상:**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(예비) 신혼부부 (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)
- 모집세대:** 400세대
- 신청기간**

구 분	신청기간	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	(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) 대출실행기간
'26. 2분기	'26. 3. 27.(금) 09:00 ~ 4. 9.(목) 16:00	'26. 4. 15.(수)	'26. 4. 30.(목) ~ 6. 30.(화)

※ 유의사항

1.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실행일(잔금일) 최소 2주전에는 부산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
2.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음

용자지원

- 취급은행: 부산은행
- 최대한도: 최대 2억 원 >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
 - ※ 단,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,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대출용도:** 임차보증금(전세 보증금)
- 대출기간:**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
- 상환방식:** 만기 일시 상환방식

2. 자격요건

- **신청 대상자:**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신청 시작일('26.3.27.) 기준 부부(예비 신혼부부 포함)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
 - 혼인 예정 3개월('26.3.27.~'26.6.27.) 이내 예비 신혼부부(증빙 필요) 또는 대출 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('19.7.1.~'26.6.30.) 이내 신혼부부
 - (예비)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 -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('26.4.8.)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
 - ※ 단,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보증신청 시(은행 서류 제출 시)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인정 가능
 -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('26.4.8.)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※ 묵시적 갱신계약은 인정 불가
 - 아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**제외 대상자:**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(배우자 포함)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-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 -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※ 생애1회 참여 가능
 - 주택도시기금 대출, 정부 및 부산시 주거 관련 지원(머물자리론, 월세 지원 등)과 중복수혜 불가

- **대상주택:**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 - ※ 제외주택 :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* 등
 - *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의 경우 '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 기간(3개월) 미충족' 시 대출 불가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대출 안내

□ 대출신청시기

- 신규임차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: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※ 계약갱신의 경우 사업 신청 전 은행 사전 문의

□ 대출한도

- 최대 2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- 단,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,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보증방식: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
※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(신용보증금액의 0.02%)는 신청인 부담

□ 대출금리: 연 3.5%

-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▷ 시 2.0%, 자부담 1.5%
-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▷ 시 1.8%, 자부담 1.7%

□ 본인 부담금리: 소득 기준별 연 1.5%, 연 1.7%

□ 이자 지원기간: 기본 2년, 최대 10년

- 대출기간 내 자녀 임신·출산 시 1명당 1회(2년)씩 연장 가능
- 대출기간 내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(2년) 연장 가능

※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1년 이상 진료를 받고,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경우

※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장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종료

□ 이자 지원 중단 사유(배우자 포함)

-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대출 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
- (결혼 예정자 가구)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사실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-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을 이용 중인 경우
-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(부부 합산 기준)
-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부산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
- 주거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
-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보유한 경우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

※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, 대출만기 연장 거절,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4.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안내

□ 신청 절차

① 사전 상담	② 사업 신청	③ 사업 대상자 선정	④ 대출 신청 및 자격적격심사	⑤ 대출실행
~'26. 3. 26.	'26. 3. 27. ~ 4. 9.	'26. 4. 15.	'26. 4. 15.~	'26. 4. 30. ~ 6. 30.
부산은행 대출 요건 등 상담	⇒ 부산은행 모바일 banking 앱 신청 ※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	⇒ 부산시 (모집 세대 초과 신청 시 무작위 추첨)	⇒ [붙임] 필요 서류 부산은행 제출, 심사	⇒ 심사 통과자 대출실행, 이차보전
신청자→ 부산은행	신청자	부산시	사업대상자→ 부산은행	부산은행, 부산시

※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 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음.

- **신청접수일시** : 2026. 3. 27.(금) 09:00 ~ 4. 9.(목) 16:00
- **접수방법**: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
 - ※ 접속경로: 대출 → 대출신청관리 → 동의·약정·예약 →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
- **사업대상자 선정**
 - 발 표 일: 2026. 4. 15.(수)
 - ※ 부산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busan.go.kr/childcare/childcare010106>) 결과 게재
 - 선정방법 : 모집 세대 초과 신청 시 무작위 추첨 선정
- **대출서류 접수**
 - 접수시기: 대출실행일(잔금일) 10영업일(최소 2주) 이전 접수
 - 신청서류: 붙임 [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목록] 참고
 - ※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'대출 실행 시기 및 필요 서류'에 대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**문 의 처**: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, 부산은행 영업점

5. 기타(유의) 사항

- 본 사업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을 통해 신청받으며, 허위·착오·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 바랍니다.
-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, 대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①공사 및 은행 내규에 부적합, ②대출한도 미산출, ③자격요건(공고문 2번) 및 ④대출 신청 시기(공고문 3번)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 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통과된 이후 대출실행 기간 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 선정 후 변경 불가합니다.
 - ※ 부부 모두 신청 불가(부부 중 임차인 1명만 신청)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그 외 기타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은행 콜센터(☎1588-6200)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 서류 목록

<모든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만 가능>

(’26. 2분기 공고 기준)

-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
 -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’26.4.8.까지 임대차계약 체결)
※ 신청 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보증 신청시(은행 서류 제출시)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
 - ③ 구 임대차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)
 - ④ 계약금(임대보증금의 5% 이상)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
※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
 -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
 - ⑥ 주민등록등본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 - ⑥-1 주민등록초본(본인, 배우자 각각)
 - ⑦ 재직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각 1부(근로자인 경우)
 - ⑦-1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각 1부(자영업자인 경우)
 -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(근로자)
 - ⑧-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,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1부(근로자 외)
 - ⑧-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 없음, 국세청발급분) 각 1부
※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, 배우자 모두 제출
 - ⑨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배우자 각 1부씩)
※ 특정 아닌 ‘일반’ 또는 ‘상세’ 발급분
 -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(청첩장, 결혼식장 예약 서류)
 - ⑪ 비수급자 확인서(거주지 읍면동 발급)
※ 임차인 기준으로 발급하나,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징구
 -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(필요시)
 -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 - ⑭ 대출실행 후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, 전입세대확인서
- *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.